##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
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 규정에 있어

개인의 자율과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헌법상 권리인 모성 보호가 충분히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며, 난임 치료 등의 지원에 있어 모성보호제도를 보완하는 등 지원 근거 규정 보완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시민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